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2 선고 2018가단57798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고1. C 주식회사

2. D

3. E

변론 종결2019. 3. 22.

판결 선고2019. 4. 12.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0,634,520원 및 그 중 737,000,000원에 대하여 2018. 9. 28.부터 2019. 1. 15.까지는 연 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C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와 시흥시 G 2차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F에 위 계약의 계약보증금을 담보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하기 위하여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두 건의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 D, E은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1	피고 C	H	F	368,500,000원	2015. 7. 16.부터 2016. 9. 15.까지
2	"	I	"	"	"

나)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계약을 포기하였고, F은 2018. 7. 24.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유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18. 8. 28. F에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합계액인 737,000,000원(= 368,500,000원 + 368,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보험계약자와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즉시 지급보증금을 상환하여야 하고 지연될 경우 지급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제하며 지연손해금은 회사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로 산정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9%이다. 위 연체이율에 따라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피보험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지급하여야 할 연체이자(2018. 9. 27.(연 6%의 연체이율이 적용되는 30일의 말일) 기준 총 3,634,520원(= 1,817,260원 + 1,817,26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E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보험사고 발생 시 원고가 피보험자인 F에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E은 피고 C,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합계 740,634,520원(= 원금 737,000,000원 + 연체이자 3,634,5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E은 피고 C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지 않으면 퇴사하라는 강압에 못 이겨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연대보증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고, 2016. 1.경 피고 C에서 퇴사하면서 대표이사인 피고 D에게 요청하여 피고 E의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 E이 강박에 의하여 원고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 E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E은 피고 C,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합계 740,634,520원 및 그 중 원금 737,000,000원에 대하여 위 지연손해금 계산 최종일 다음 날인 2018. 9.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9. 1. 15.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창희

별지